영등포구의회 제202회 임시회

『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 동의안』

檢討報告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7. 9. 1.

社會建設委員會 專門委員

1. 경 과

의안 제255호로 2017년 8월 2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○ 다문화도시들 간 정책을 공유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 가입함에 있어 "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함에 있어 "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 동의안"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제152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협의회 개요

- 명 칭: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

- 회원자격 :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 거주하면서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 자치단체(현재 24개 자치단체 가입)

- 사 업: 다문화 관련 제반사항 협의 및 개선방안 제시 등

- 회비 및 분담금 : 연 360만원

- 나.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 필요성
-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타 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을 적극 공유할 필요성이 있고
- 내·외국인간 갈등해소와 중국동포 밀집지역 개선 등 지역현안에 대해 협력 및 해결방안 모색 필요

4. 관계법령

○「지방자치법」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

5. 검토의견

-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「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 동의안」은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 정책 공유와 다문화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, 해결방안 모색 등 다문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,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.
- 우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15년 11월 기준으로 57,0001)명으로,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, 전국 기초자기단체 중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.

^{1) 2015.11.1.}기준 행정안전부 인구주택조사

※ 우리 구 외국인 현황 (2015.11.1.기준)

(단위:명)

구 분	계(명)	결혼 이민자	혼 인 귀화자	외국인 근로자	재외동포	유학생	와국인주민 자녀	기타
인구	57,000	2,558	2,791	20,113	13,616	294	1,677	15,951

- 다문화 가족은: 10,514명
- 이처럼 많은 외국인이 거주함에 따라 교육, 문화 등 우리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고, 생활문화, 언어 등의 차이로 내·외국인간 상호 이질감 및 갈등이 끊이지 않음.
- 따라서 외국인들을 둘러싼 갈등과 사회문제에 대해 기초자치 단체 간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,
-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을 통하여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보공유와 정책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다면 우리구 다문화 정책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법

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2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95조(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)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(이하 " 협의회"라 한다)는 광역 계획 및 그 집행, 특수행정수요의 충족, 공공시설의 공동설치, 행정정보의 교환, 행정·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 협의 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·도로 구성한 다.